

창원지방법원 2017. 5. 23 선고 2016나5817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---

## 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17. 5. 23 선고 2016나58175 판결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. 10. 13 선고 2015가단6209 판결

## 전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종결 2017. 4. 4.

판결 선고 2017. 5. 23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. 10. 13. 선고 2015가단6209 판결

## 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/2 지분에 관하여 마친
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1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10. 23.부터 2015. 12. 10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고쳐 쓰는 부분

#### 「3. 판단

##### 가.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

위 기초 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더라도, 원고가 2014. 10. 22. 피고로부터 40,000,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659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# 나.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

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4. 10. 22.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. 그러나 위 기초 사실, 제1심 증인 C의 증언,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상의 매매계약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사정(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이 사건 부동산의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로일이 같은 점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4. 10. 20.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), ②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, 원고가 2014. 10. 22.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

마쳐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,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출금  
피고로부터 40,000,000원을 차용하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/2 지분에  
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해 온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 
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.」

### 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홍기

판사구지인

판사이병탁